

2020년 하반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1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 자문	
	2	교육부 예규 개정건의 추진에 따른 법률 자문	
	3	교육부 예규 개정에 따른 호봉 인정 비율 변경	
	4	교육재난지원금 관련 법률자문	
	5	법원 문서제출명령에 따른 행정심판 서류 제출 범위	
	6	2020.3.1.이후 학교장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7	소송구조사건 소송비용의 변호사 보수산입범위	
	8	시설공사 공사대금 반환 관련한 법률 자문	
	9	반복적인 독촉장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유무	
	10	공무원 보수 환수에 대한 법률 자문	
	11	○○초 이전적지 토양오염 손해배상 청구소송	
	12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요건	
	13	교육감소속근로자채용등에관한 조례 노조 연대 조례 전부개정안 법령 해석 요청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14	○○○학교 교사,교지 구입에 관한 법률 자문	
	15	○○○학교 지도, 감독의 범위 관련 법률 자문	
	16	성교육 자료의 명예훼손 여부	
	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법률 자문	
	18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 관련 법률 자문	
	19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고지에 따른 자문	
	20	○○○초 태권도부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	
	21	유치원 설립 운영의 결격사유 해당여부	
	22	상위법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체 행정처분 기준으로 처분가능 여부	
	23	공사계약미이행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법률 자문	
	24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비용액확정 관련 법률 자문	
	25	공익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대한 법률 자문	
	26	학적 사무처리 관련된 법률 자문	
	27	전 학원장의 학원법 위반 사항을 현 학원장에 대한 행정처분 민원 관련 법률 자문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28	사립유치원 지도점검 행정처분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29	○○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 대금 압류설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처리	
	30	○○○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관리세부기준에 관한 질의	
	31	선택분교 불법점유자들에 대한 임대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 가능여부	
	32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법률 자문	
	33	학교부지 도로 위 학생 안전로 설치 가능여부 법률 자문	
총계		33건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법률 자문 결과 보고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	기간제교원 임용 계약의 효력에 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교 측의 사정(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연기 명령)에 따라 당초 채용 공고와는 달리 계약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여 재공고하기 위하여, 학교 측에서 작성한 계약서 서식에 근로자만 날인하고 학교 측은 날인하지 않았을 시, 이를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하여 학교 측에서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채용공고를 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대구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8가합972 판결)에 따라, 당초 채용 공고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날짜에 출근하면 된다고 언급한 것은 채용 공고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써 청약의 유인으로 간주할 수 있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조금 더 구체적인 채용공고 및 통보 내용이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최소한 계약의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도의 의사의 합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례(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1다102080 판결 참조)에 따라, 고용계약의 중요사항인 급여에 대한 부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성립되었다 할 수 없고,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라고 간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당사자간의 의사합치’가 없어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보거나, 구두계약으로 성립되었으나 합의해지되고 새로이 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약을 체결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이를 두고 부당해고라 보기는 어려움
2	교육부 예규 개정건의 추진에 따른 법률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경력환산을 상향 인정 기준의 인정대상기관 개정이 상 위법인 「공무원보수규정」 과 예규 [별표1]의 적용기준에 위배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공무원보수규정」 별표22 비고 1을 바탕으로 교육부 예규로 서 불공평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공무원보수규정」에 위배되지 않음 예규 [별표2]에 위와 같은 개정 사항을 추가하고자 한다면, 예규 [별표1]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교육부 예규 개정에 따른 호봉 인정 비율 변경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인 공무원 보수규정과 다른 경력환산율을 규정 한 구 예규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을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상위법령에 반하여 예규 별표1. 규정은 효력이 없고, 효력이 없는 것을 마찬가지로 예규 제54호로 단서규정으로 종래의 호 봉을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하여 무효가 유효가 되지 는 않는다.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여 호봉을 인정받기는 어려 움 <input type="checkbox"/> 현재의 예규와 공무원보수규정 하에서는 예규를 고쳐서 부칙 제2조를 삭제하지 않는 한, 기존 호봉을 보호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 <input type="checkbox"/> 구 예규는 상위법령인 보수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구 예규에 따라 인정받은 경력은 적법하고 적절한 방법에 의하여 인정받은 경력으로 볼 수 없고,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 안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4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미추홀구 학생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대상 기능여부 자문 요청 질의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에 해당하는지? 질의2: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2조 제3호의 교육재난으로 볼 수 있는지 그 리고 동조례 제5조의 지원대상이 되는지?	<input type="checkbox"/> 질의 1 사회재난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공통적임 <input type="checkbox"/> 질의 2 교육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공통적임
5	법원 문서제출명 령에 따른 행정심 판 서류 제출 범 위	<input type="checkbox"/> 「민사소송법」 제334조에 의거 원고(피해학생)측 소송대리인이 ‘피고(가해학생)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청구 와 관련하여 보관하고 있는 기록 일체’에 대해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문서 제출명령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법 원에 제출하라’고 결정하여 해당 결정문이 행 정심판위원회에 송달되었는바, 「행정심판법」 제 41조(발언 내용 등의 비공개) 및 동법 시행령 제29 조(비공개 정보)에 의거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위 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및 재결에 참여한 위원 명단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문의	<input type="checkbox"/> 문서제출명령이 있다는 면에서는 기록 일체를 제출하는 것 이 원칙이지만, 원고가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사 안으로서 문서제출명령신청에서 ‘증명할 사실’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의 내용, 이에 대한 위원회의 처분, 처분경위, 이에 대한 피고의 이의 원인, 이에 대한 결과들 등으로, 행정심판 회의록, 위원명단에서 개인정보 (이름 등)을 블랭크처리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문서제출명 령에 임하는 것이 상당함 <input type="checkbox"/> 민사소송에 필요한 문서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법원 의 결정에 따라 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재결서’만 송 부하고, 비공개 정보인 위원들의 발언은 보낼 필요 없음(문 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과태료나 제재 없으며, 청구인인 피 고 및 피청구인인 학교장이 작성한 서류 등 제출 필요 없 음 <input type="checkbox"/> 행정심판법상 비공개 자료는 미제출, 재결서는 제출, 그 외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청구인(가해학생) 및 피청구인(학교장)이 작성한 자료들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 있어 주장하는 내용들과 큰 차이는 없어 보이고 재판부에 제출해도 공정한 재판을 해칠 우려가 없고 오히려 실체관계 파악에 도움이 될 것이므로 인증 등본하여 송부하는 것이 타당함</p> <p><input type="checkbox"/> 행정심판법상 비공개 자료는 비공개, 청구인(가해학생) 및 피청구인(학교장)이 작성한 자료들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므로 비공개, 재결서는 공개</p> <p><input type="checkbox"/> 법원이 문서제출을 명한 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상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문서로서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 그럼에도 공문서보관기관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임의제출하는 경우, 행정심판법상 비공개 자료는 비공개, 그 외 비공개사유는 구체적인 사유를 적어 비공개 처리, 공개가능 문서만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p>
6	2020.3.1. 이후 학교장 학교폭력 처분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된 것을 말하며, 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함) 부칙 제3조에 의거, 법 시행 당시 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법 시행 전 발생한 사안	<input type="checkbox"/> 부칙에 특별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법령의 시행 이후에는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비록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전에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 법률 개정 이후에도 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계속하였다 하여도 심의를 마친 이후 해당 조치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장의 의한 처분은 적법한 처분권자에 의한 처분으로 보이지 않으며 지금이라도 교육장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에 대해 법 시행일(2020.3.1.) 후 학교장이 조치 결정을 할 수 있으나, 부칙 제4조에 의거, 학교장 조치 결정일이 법 시행 후로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학생의 권리구제 절차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항에 따른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문의</p>	<p>명의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행정심판 청구 가능</p> <p><input type="checkbox"/> 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취지는 행위시법주의에 따라 행위당시의 법률을 적용하라는 것이므로, 비록 개정법 시행 후에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행위시법에 따라 재심절차도 종전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므로, 가해학생의 조치결정 취소를 구하는 취소심판 형식의 청구 가능</p> <p><input type="checkbox"/> 학교장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는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에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행정심판 청구 가능 여부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개정 규정은 종전에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기구를 행정심판위원회로 일원화한 것에 불과하고 학교장의 조치에 대한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행정심판청구권을 배제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행정심판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p> <p><input type="checkbox"/>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에 경과규정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였으므로,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이 내린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하고 불복절차로 행정소송 진</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행만 가능</p> <p><input type="checkbox"/> 부칙 제4조에 의하면 법 시행일 이후에 학교장의 조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없고,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 가능</p>
7	소송구조사건 소송비용의 변호사 보수 산입범위	<p><input type="checkbox"/> 소송구조로 진행된 사건의 경우 소송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만약 소송비용 지급시 소가를 기준으로 계산한 변호사 성공보수에 착수금이 포함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소송목적값 5,000만원에 비례한 변호사 보수는 440만원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변호사 보수 인정. 소송구조로 국고에서 변호사 보수가 지급된 경우 환수결정이 있고, 위 결정에 따라 이후 추심 등 청구 절차 형식으로 진행</p> <p><input type="checkbox"/> 개인간의 약정은 소송구조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변호사보수는 변호사보수 확인서에 기재된 100만원.</p>
8	시설공사 공사대 금 반환 관련한 법률 자문	<p><input type="checkbox"/> ‘해산간주’ 된 법인에 대해 반환 소송 가능 여부 및 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면 소송 외에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p> <p><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의 적용기간, 기산시점 및 중단사유(학교의 이행독촉행위, 업체의 이행확약서)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업체의 이행확약서를 근거로 지급명령 진행이 가능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법인 등기부상 해산간주여도 청산잔존 시 소송 제기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상 금전채권 5년 소멸시효 적용 채무이행확약서는 약정된 환급일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소멸시효가 경과한 채권이라도 소송제기가 가능하며 채무자가 소송에서 소멸시효 항변을 할 경우에만 법원이 당부 판단)</p> <p><input type="checkbox"/> 지급명령은 지급명령정본 송달 불가 예상에 따라 소 제기 권유</p> <p><input type="checkbox"/> 법인 등기부상 해산간주여도 채무잔존 시 소송 제기 가능</p> <p><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상 금전채권 5년 소멸시효 적용 채무이행확약서 채권은 약정 환급일로부터 소멸시효 진행 (해당 사건의 경우 4회 분할 변제 확약에 따라 1, 2회차는</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소멸시효 완성, 3, 4회차는 진행중) 학교의 이행촉구 공문발송은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으나 내용증명 발송 후 6개월 이내에 소 송제기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지급명령은 가능하나 송달 불가 예상되어 소 제기 권유</p> <p><input type="checkbox"/> 법인 등기부상 해산간주여도 청산잔존 시 소송 제기 가능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상 금전채권 5년 소멸시효 적용 채무이행확약서 작성의 경우 지급일 기준으로 5년 시효 적용(본 사안의 경우 분할급 변제기별로 각각 시효 진행) 학교의 이행촉구 공문은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 없음 <input type="checkbox"/> 지급명령 신청가능함</p>
9	반복적인 독촉장의 소멸시효 중단 효력 유무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가 분기별로 시행하는 납입고지 및 독촉 행위가 지속적으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을 갖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독촉 1회 이후 다시 독촉하는 경우 민법의 최고와 같은 효력만 인정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납입고지 및 독촉행위는 ‘최고’에 해당하는 행위이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3개월 분기별로 납입 - 고지 및 독촉행위를 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3개월 분기별로 납입고지 및 독촉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하여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 <p><input type="checkbox"/> 납입고지 및 독촉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최고의 독촉이후의 재독촉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법원은 최초 독촉만이 시효중단 효과가 있고 그 이후의 독촉 또는 납부촉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는 독촉이 아니라 민법상 최고에 불과하다고 판결하였음</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이와 같은 납입고지는 민법상 최고의 효력밖에 없으므로 그 고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민법 제174조 소정의 권리행사를 하여야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함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가 독촉 1회 이후 다시 독촉하는 경우 재차 독촉 고지일로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등 민법 제174조 소정의 권리행사를 하여야만 재차 고지일에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고, 단순히 분기별로 납입고지 및 독촉 행위만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만으로 시효중단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님 <input type="checkbox"/>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상 압류금지 재산이 규정된 사정 및 민사집행법 상 압류를 당하지 않을 채권에 대한 규정 등은 공익목적 및 사회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는 강행법규에 해당되므로 당연 분납액 한도 결정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이 기준이 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환수조치되는 초과 임금과 관련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하여 퇴직 후 받는 퇴직금에서 상계는 불가능, 납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진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소송 전 채권회수 방법의 일환으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 필요)
10	공무원 보수 환수에 대한 관련법률 자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분납 시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를 준용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퇴직 후 미납 시 미납금에 대한 회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호봉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제한 범위 내에서 공제 또는 상계 가능 <input type="checkbox"/> 초과지급보수 반환청구권은 교육청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환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력관계가 아니라,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공법상 채권·채무 관계에 해당하므로 곧바로 압류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등의 체납처분 불가, 소송절차를 통한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어야 강제집행 가능</p> <p><input type="checkbox"/>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하고, 재직기간 반환을 못할 경우, 지급명령 등 민사청구를 하여 확정되면 급여에 대한 압류가 가능함</p> <p><input type="checkbox"/> 체납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세기본법 상 압류금지 재산이 규정된 사정 및 민사집행법 상 압류를 당하지 않을 채권에 대한 규정 등은 공익목적 및 사회정책적 성격을 띠고 있는 강행법규에 해당되므로 당연 분납액 한도 결정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6조의 규정이 기준이 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환수조치되는 초과 임금과 관련하여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동 규정을 준용하여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하여 퇴직 후 받는 퇴직금에서 상계는 불가능, 납부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진의사가 없는 경우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제기(소송 전 채권회수 방법의 일환으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등 보전조치 필요)</p>
11	☆☆초 이전적지 토양오염 손해배상 청구소송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부지에 자연 풍화작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소오염은 토지를 소유한 기간에 비례하여 ‘토양오염’ 이 진행된 것이라며 피고의 책임을 주장.	<p><input type="checkbox"/>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발생한 ‘토양오염’ 은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지하 심부에 있던 토양을 지상으로 반출하고, 이를 다시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일련의 행위를 통해 발생시킨 것으로 원고에게 책임이 있음</p> <p>- 토양환경평가 신청은 환경부에 등록된 토양환경평가기관에 양수자, 임차인 등 누구나 신청 가능함.</p>
12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수당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 사무직원 명예퇴직 신청요건 중 재직기간 기준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	<input type="checkbox"/>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인천광역시 사립학교재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육감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지급 요건	<p>급규정」의 지급대상 기준(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에 대하여 관할청에서 자체 요건(재정결함지원교 근속 10년)을 추가하는 것이 관할청의 지원금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재조건을 부여하는 정당한 재량권 행사인지, 법률의 위임 없는 과도한 규제인지 여부</p>	<p>은 지원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체적인 요건을 부가하여 규정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명예퇴직희망자가 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재정지원결함교에 10년 미만 근무하였다고 해서 내부지침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사립학교 교직원의 권리를 제한하는 지침으로 과도한 규제임</p> <p><input type="checkbox"/> 교육감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있다 하더라도, 제재 조건을 추가 부여하는 것은 권리제한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할청의 재량권을 남용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있음</p>
13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노조 연대 조례 전 부개정안 법령 해석 요청	<p><input type="checkbox"/> 조례명에 처우라는 단어를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서 정의·관리되는 근로자를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동일한 내용이라면 조례보다 규칙에 포함시키는 것이 입법경제상 타당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의 일부만 적용하는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단체협약에 명시되었거나 포함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의 조례개정안이 타당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기존 법령에서 ‘처우’ 라는 단어를 극히 제한적으로 취약한 대상을 대상으로만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대상자들의 자존감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서 정의되어 관리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위법인 조례로 굳이 다시 규정하는 것이 무의미함</p> <p><input type="checkbox"/> 중복입법으로서 비효율적임</p> <p><input type="checkbox"/> 일부규정을 발췌하여 하위법에 규정하는 경우 자칫하면 법령 사이에 충돌의 여지가 생길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조례에 반복 규정하는 것은 단체협약을 변경할 때마다 조례변경을 해야 하는 불필요한 반복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타 조례개정에 포함되는 내용에 대하여 해당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여 병합심사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임</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명 등을 종합해 볼 때 처우라는 단어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서 정의·관리되는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내용이라면 규칙에 포함하는 것이 입법경제상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기존의 단체협약을 통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조례에 포함시켜야 할 필요는 없음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의 조례개정안이 법리적으로 문제 될 여지는 없는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처우라는 표현이 보호나 관리대상자들에 대한 법령에 주로 사용하고 있어 반드시 들어갈 표현으로 보이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타 법령에서 정의되어 관리되는 근로자는 조례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정원, 배치, 채용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기간제법의 취지를 무시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결과를 초래 <input type="checkbox"/> 단체협약에서 다루어오고 있던 상황이라면 조례로 굳이 규정할 필요성이 간절히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의 조례개정안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법령우위의 원칙 위배)교섭으로 정할 사항을 교육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집행기관이 상위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조례로 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법체계상 조례에 위 법령과 위반될 가능성이 있는 조항을 조례에 담을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집행기관의 고유권한 관련) 관례가 대표적으로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으로 본 인사권에 대한 전반적 내용을 입법 기관의 조례 전부개정 요구가 적극적·사전적 개입에 해당되는 것인지?	<input type="checkbox"/> 교육감의 인사권을 사전적으로 기준을 정한 규정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사이의 상호 견제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교육공무직원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전국적으로 통일을 요구하는 국가사무여서 조례로 제정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기간을 정함이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은 인사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관장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에 정면으로 반하며 이는 지방의회가 교육감의 업무에 대하여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됨 <input type="checkbox"/>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하여 정하여질 성질의 것이며 조례로 규정할 경우 단체 협약 변경 시마다 매진 조례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다르게 되어 입법경제성이 없음 <input type="checkbox"/>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한 전보 및 교류 등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조례로 설정하여 규정하는 부분 등과 같은 부분은 입법기관이 집행기관의 인사권 행사에 관하여 적극적·사전적으로 개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14	○○○학교 교사·교지 구입에 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지 및 교사의 소유주 변경이 외국교육기관법 제 5조 4항에 명시한 중요사항 변경인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만약 중요한 사항 변경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어느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지 여부 (교육부 장관, 시교육감인지의 여부)	<input type="checkbox"/>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국교육기관법 제5조 제1항의 외국학교법인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에는 “교사(校舍), 교지(校地)의 확보(임차를 포함한다)” 로 되어 있어 소유형태를 불문하고 있으므로(시행령 제2조 제1항 1, 2호) 교지 및 교사 소유자 변경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위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시행령 제2조 5항은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 이라 함은 학교의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설립·경영자 및 제3조 제1항 제14호(부설학교를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의 사항)의 사항을 말한다 “고 함으로써 교지 및 교사의 소유자 변경은 중요사항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위 중요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무</p> <p>사립학교의 교지 및 교사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담보제공을 할 수 없으나 외국교육기관법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은 이러한 제한이 없으므로 자신의 교사·교지를 담보로 제공한 후 대출을 받아 교사·교지 매입이 가능합니다.</p>
15	○○○학교 지도, 감독의 범위 관련 법률 자문	<p><input type="checkbox"/> 외국교육기관의 지도·감독의 범위는?</p> <p><input type="checkbox"/> 지도감독의 범위가 외국교육기관법에서 규정하는 내용만이 대상이라면 그 구체적인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p> <p><input type="checkbox"/>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교육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로 되어 있는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학비환불이라든지, 회계 자료 요구 등이 외국교육기관시행령에서 정하는 관련 자료제출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이하 ‘외국교육기관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목만이 지도·감독의 범위가 아닙니다. 외국교육기관의 지도·감독의 범위는 외국교육기관법 제3조에 따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지도·감독의 범위는 제외되지만, 외국교육기관법 5조, 6조, 7조 내지 21조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위 가항 참조(제5조 설립승인 감독, 제8조의 2 교직원 임용 감독, 제12조 회계 감독 등)</p> <p><input type="checkbox"/> 이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체적으로,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에 산서,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그 밖의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따라서 사무 감독을 위하여 ‘회계자료’ 등은 요구할 수 있으나 채드워국제학교에 학비 환부를 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협조요청 형식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학비환부의 비율이나 학비환불 조정을 요청 할 수는 있겠으나 위 국제학교에서 협조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강제할 방법은 없음</p>
16	성교육 자료의 명예훼손 여부	<p><input type="checkbox"/> 성교육 자료에 신문기사 내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혹은 기타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성교육 자료에 신문기사 내용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및 초상권 기타 위법 사항이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본 건에서 당사자 및 주변의 지인, 친구들이 이를 알고 있어 명예훼손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명예훼손은 2차 가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고, <u>노컷뉴스 보도나, 지도서에서는 명예훼손적 내용자체가 없어</u> 아예 명예훼손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p> <p>1번 답변: 기속규정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사항인 예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서 허용될 수 없음. 3번 답변: 평생교육법 제31조에서 초·중등교육법 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나, 그 준용되는 영역은 교원의 복무, 국내 연수, 재교육 등이고 기본적으로 보수 규정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는데, 일부 준용 규정을 들어 일괄적으로 보수 규정까지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번 답변: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이고, 나아가 취소 할 수 있다 ‘ 라고 재량 규정으로 규정하여 사유를 보아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이 부여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재량판단의 여지를 없애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음. 5번 답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자의적 운영의 여지를 남겨두어, 위법의 소지가 있음.</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7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한 법률 자문	<p>□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관련[붙임1]</p> <p>1. 제4조 ①항 개정(안)관련: ‘지원할 수 있다’ 를 ‘지원한다’ 로 개정시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권이 침해될 소지 여부</p> <p>2. 제4조 ①항 개정(안)관련: 준용법령(사립학교법)을 추가하는 것이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에 해당하는지</p> <p>3. 제4조 ①항 1호 개정(안)관련: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준하는 교직원 인건비 지원 가능 여부</p> <p>4. 제5조 개정(안) 관련: 조례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 가능 여부</p> <p>5. 제5조 개정(안) 관련: ‘설립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 시’ 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p>	<p>□ 1번 답변: 기속규정으로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사항인 예산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로서 허용될 수 없음.</p> <p>3번 답변: 평생교육법 제31조에서 초·중등교육법 규정이 준용되고 있으나, 그 준용되는 영역은 교원의 복무, 국내 연수, 재교육 등이 고 기본적으로 보수 규정에 대한 준용 규정이 없는바, 일부 준용 규정을 들어 일괄적으로 보수 규정까지 준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p> <p>4번 답변: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법률 유보’ 원칙에 따라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이유이고, 나아가 취소 할 수 있다 ‘ 라고 재량 규정으로 규정하여 사유를 보아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시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는 것은 법이 부여하고 있는 집행기관의 재량판단의 여지를 없애기 때문에 위법의 소지가 있음.</p> <p>5번 답변: 설립 취지에 맞지 않는 시설 운영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자의적 운영의 여지를 남겨두어, 위법의 소지가 있음.</p>
18	지방공무원 정원 책정 승인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p>□ 우리교육청이 요청한 정원 책정 승인 사항(감사기구의 장 3급 감원, 정책기획조정관 3급 증원)에 따라, 교육부에서 답변한 내용(「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2제1항에 따라 “승인 미대상” 통보)에 대한 법률 자문 요청</p>	<p>□ 3급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거나, 3급 일반직공무원의 정원은 유지하면서 그 직렬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직급을 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p> <p>□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부에 승인 요청한 정원 책정 사항은 “감사기구의 장 3급을 감원하고, 정책기획조정관 3급을 증원” 하는 것으로서, 이는 교육부장관의 승인 대상이 아닌, “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 에 해당하여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교육감이 자체</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방공무원 정원 조정 사항에 해당한다고 사료 됨.</p> <p><input type="checkbox"/> 교육부장관은 인천시교육청의 정책 책정 사항이 규정 제15조의2제1항 중 예외 사유, 즉 ‘정원 증가가 없는 경우 및 직렬 변경의 경우’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사료되어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정원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p>
19	<p>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고지에 따른 자문</p>	<p><input type="checkbox"/> 「2020구합52751 학교용지부담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 행정고지에 따른 소송참여 여부 등 추후 대응방안에 대해 질의</p>	<p><input type="checkbox"/>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징수 권한은 인천광역시에 있으며, 가사 남동구가 납부 받은 학교용지부담금이 해당 처분의 무효 등에 의하여 반환한다 하여도 위 반환금은 인천광역시가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귀청이 부담하여야 할 것은 아님</p> <p>- 또한 귀청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서 어떤 경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바, 귀청은 소송의 승패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바 이 사건 소송에 보조 참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학교용지특례법 제5조에 의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권한은 인천시장에 있으며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에서 학교증축경비를 교부받는 지위에 있을 뿐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어 소송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p>
20	<p>☆☆☆초등학교 태권도부 운영에 관한 법률 자문</p>	<p><input type="checkbox"/> 「초·중등교육법」 제32조 ①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동법 시행령 제59조의3 ②에 따라 홈페이지</p>	<p><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해 심의 안건인 ‘2019학년도 태권도 지도자의 공석에 따른 태권도부 운영을 위한 심의(안)’ 과 관련한 제안설명에서, ‘학부모 및 체</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요청	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있는 바, ☆☆☆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이 「태권도부 해체 결정」에 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 자문이 필요함	육소위원회 회의 실시 결과 정부정책에 맞게 소수의 엘리트 체육이 아닌 다수의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클럽 활성화를 위하여 새로운 학생을 영입하지 않고, 현재 본교에 소속된 11명의 학생들은 태권도부는 유지하되 7명은 학원에서 개인지도를 받고 학부모님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중학교 연계교육을 실시하여 훈련을 받고자 하며,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대회 참가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위와 같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참석 위원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와 같은 회의록 기재 내용에 의하면, 2019.11.27. 개최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결과는 ☆☆☆초등학교의 2020년도 태권도부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태권도부는 유지하되, 다만, 그 운영방법을 중전과 달리하여 운영(즉, 새로운 선수 학생은 영입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선수 학생들의 훈련도 학원이나 중학교 연계교육을 통하여 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 당해 태권도부를 확정적으로 해체 또는 폐지하는 취지라고는 보기 어려움.
21	유아학비 반환 처분 취소 청구 소송 관련 법률 자문	□ 공금 유용에 따른 벌금형(사립학교법 제29조)이 유치원 설립·운영의 결격사유(유아교육법 제8조의 2)에 해당되는지? 추가로 확정판결 이전인 현 상황에서 결격사유가 인정되는지? 또한, 이를 근거로 변경인가 불허 및 검토 유보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 유아교육법 제8조의 2에 따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유아교육법 제32조에 따른 운영정지 또는 폐쇄를 명하는 사유에는 해당됨, 추가적으로 아직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할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현재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같이 확정되지 않는 사유로 변경인가 거부 시 반대로 행정소송 및 민원 제기 가능성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이 제기됨. 다만, 검토유보(보완요청)으로 진행 할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 제8조의 2에 따른 결격사유에는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됨, 추가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지 않는 현재 상황에서는 유치원 설립 운영의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변경인가 불허 시 문제 발생 소지는 다소 있으며, 만약 검토유보(보완요청)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 제8조의 2에 따른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음, 확정판결 여부 상관없이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변경인가 불허 및 검토유보(보완요청)로 판단할 경우 이에 대한 정당성 및 합리성이 없음에 따라 변경인가 불허, 검토유보로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 제8조의 2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나, 추가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추가 항소 및 재판의 결과가 바뀔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는 결격사유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변경인가 불허 시 문제 발생 소지는 있고, 검토유보(보완요청)에 대한 견해는 관련법등 근거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이는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 제8조의 2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행정청에서는 검찰 처분을 인지함에 따라 보완요청(시교육청에 시</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정명령을 받은 사실 여부 및 이행여부 등)하여 검토 유보하는 방법으로 안내(절차상으로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 제8조의 2 결격사유는 제한적 규정으로 확장해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검찰 처분 근거로 변경인가 불허 시, 관련사항에 따른 소송이 제기 될 경우 행정청에서 불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검토유보(보완조치)에 대한 견해는 상대방에게 적정한 사유 안내 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 제8조의 2 결격사유에 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결격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법원의 확정판결 이전인 지금 상황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다고 보이며 변경인가를 실시하여야한다고 보여지고, 변경인가 불허, 검토유보에 대한 정당한 이유 및 법적근거가 없다고 판단됨.</p>
22	상위법 행정처분의 개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체 행정처분 기준으로 처분 가능	<input type="checkbox"/> 상위법(유아교육법 시행령 2019.8.6.) 행정처분 기준의 개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자체 행정처분 기준에 근거하여 처분이 가능한지? 개별기준에 없는 경우 위반행위 적용과 처분기준의 수준 고려 시 검토해야할 사항은?	<input type="checkbox"/> 새롭게 제정된 행정처분이 기준에 의하더라도 개별기준에 정하지 않은 법 제30조제1항의 소정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관할청의 종전의 자체 처분기준이 새롭게 제정된 위 대통령령의 개별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한 향후에도 자체 처분기준에 따른 행정처분은 유효할 것으로 사료됨.(대통령령 개별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문제되지 않음 - 유선추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변론 종결 전에 관련 토지의 지분을 매수자에게 소송 제기 가능 여부	<p>유아교육법 제30조가 국민의 법익에 침해되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였고, 유아교육법 시행령 시행 [별표]의 2 제2호 아.항이 제시→규정하였기에 자체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행정행위를 하여도 재량권의 일탈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개별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자체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갑설)</p> <p><input type="checkbox"/> 자체 처분기준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유효하며, 이후에도 개별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처분기준을 근거로 처분이 가능하다.</p> <p><input type="checkbox"/> 변론 종결 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라 소송제기 가능</p> <p><input type="checkbox"/> 다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필요</p> <p><input type="checkbox"/> 추정승계인에 해당하여 승계집행문 부여 필요</p>
23	사립유치원 학원 운영을 위한 변경인가 가능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에서 원아 수 감소를 이유로 학원 운영을 위해 유치원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 변경 <input type="checkbox"/> 건축법, 소방법 등 용도 변경 시 고려해야 하는 법령에 위배사항이 없을 시 관할청에서 해당유치원의 내부구조 변경 인가 처리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요청	<p><input type="checkbox"/> 변경인가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나, 유아 배치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유아교육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변경인가를 하는 것이 상당함.</p> <p><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상 변경 인가신청 서류를 충족하면 관할청에서는 인가 여부만을 판단하여 변경 인가하는 것이 타당함.</p>
24	직위해제의 적절성 판단 관련	<input type="checkbox"/> 직위해제의 적절성 판단에 따른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직위해제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 또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25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서 반영 여부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학원에 고용된 학원 강사가 수강생에게 폭행한 사실로 약식명령 벌금 50만원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바 이로 인하여 해당 학원에 대해 생활지도 불철저(학생체벌 등) 를 이유로 경미한 사항 벌점 10점이 적정한지, 고의· 중과실 벌점 30점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적정한지 여 부	<input type="checkbox"/> 반의사 불벌죄로서 공개사과에 이은 고소취소가 있었으면 불 기소처분이 이루어졌을 것이나 그 대처에 문제가 있어서 약식 명령까지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는 체벌에는 해당할 지라도 경미한 사항으로 판단하여야 마땅할 것임. <input type="checkbox"/> 경미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벌점 10점의 부과가 적 정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약식명령 50만원은 벌금형과 수강생에 대하여 훈육의 방법으 로 우발적인 폭행에 이르렀다고 보여지므로 ‘경미한 사항 벌 점 10점’ 이 적정하다고 보여지고 그것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 함. <input type="checkbox"/> 강사를 주의 깊게 살펴 관리·감독할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여지고, 강사가 공개사과를 하였다 하더라도 피해학 생에 대한 사과의 진정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임, 50만원의 벌 금형이 결코 경미한 처벌이라고 보여지지는 아니한 점으로 벌 점 30점에 해당하는 처분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약식 벌금 50만원에 해당하여 경미한 사항으로 보이고 해당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해결된 점을 볼 때 벌점 10점이 적정함. <input type="checkbox"/> 학생, 학부모, 학원이 원만히 합의함, 폭행의 결과가 경미함, 학생들 앞에서 강사가 공개사과 함, 단순폭행으로 약식명령 받음을 이유로 경미한 사항 벌점 10점이 적적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강사, 부원장의 1차 의견서에 ‘퇴사’ 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어 이를 행정청은 ‘퇴사’ 한 것으로 보고 관련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학원은 이의 신청을 하며 급여를 계속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권고 휴직’에 해당함을 주장하고 있는 사안에서 이를 관련자의 진술에 따라, ‘퇴사’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혹은 계속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사실을 근거로 하여 ‘권고 휴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원으로부터 급여를 계속 받았고 또 학생들의 학습권을 위하여 원장의 권고에 따라 복귀하였다는 것이므로 사직이 아닌 휴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임. <input type="checkbox"/>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해 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권고 휴직’ 하였다가 복직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해당 강사가 학원을 퇴직하였다가 다시 채용되었음을 전제로 한 제재 처분은 불가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강사의 확인서에는 본인 스스로 ‘퇴사했다’고 밝히고 있고, 퇴사 후에도 약정 급여나 위로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퇴사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강사의 수업중단 및 수업재개는 퇴사 후 재계약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학원에서 강사에 대한 급여를 계속 지급하였고, 2개월 후에 복직하여 수업을 한 것으로 볼 때 권고 휴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강사입장에서는 강의를 그만둔다는 의미에서 퇴사와 휴직은 차이가 없으며, 급여가 정상적인 급여에 비하여 감액지급된 것으로 보아 휴직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권고 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임.
26	행정소송 집행정지	<input type="checkbox"/> 현재 행정소송 2심 변론 진행 중인 사건으로 집행정지	<input type="checkbox"/> 행정소송 1심에서 신청인 학원측이 패소하고 항소를 제기하여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기각에 따른 행정처분 진행 절차 법률 자문	기각에 따른 행정처분 진행 절차에 대한 질의	항소심 진행 중인데, 위 항소심에서 다시 신청인 학원측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이어 항고도 기각되었으므로, 향후 이 사건 행정처분은 계속 진행되어도 문제 없음.
27	사회복무요원 공상에 따른 치료비 지급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사회복무요원 공상에 따른 치료비에 대하여 ◆◆◆◆◆◆ <input type="checkbox"/> 공단에서 민사소송 진행 시 소송 당사자(피고)가 당시 보험회사가 되는지? 아니면 ♀♀교육지원청이 되는지? <input type="checkbox"/> 사회복무요원 공상에 따른 치료비에 대한 공단부담금을 복무기관인 동부교육지원청이 부담해야 하는지? 아니면 당시 계약한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하는지?	<input type="checkbox"/> 당사자는 ♀♀교육지원청임. <input type="checkbox"/> ◆◆◆◆◆◆공단에 ♀♀교육지원청에서 납부 후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공단에 ♀♀교육지원청에서 납부 후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하며 ◆◆◆◆◆◆공단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공단에 ♀♀교육지원청에서 납부 후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하며, 소송 진행 시 보험회사에 대하여 소송 고지 신청을 하여 소송 종결 이후 보험회사에 구상권 청구 가능.
28	학교내 ☆☆☆관아 경관사업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구청에서 학교측과 협의가 되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하였는데 ○○구청에 공사중지 명령을 공문으로 보낼수 있는지 공사를 시작하여 학교 담벼락을 훼손하였는데 그 부분	<input type="checkbox"/> 학교측의 동의 없이 학교측의 공유재산인 학교의 담벼락을 훼손하였다면, 교육감(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로 인한 손해보상이나 의의 원상복구를 요구할 수 있음. 다만, ○○구가 해당 사업을 계속 시행함으로써 학교의 담벼락 등이 계속 훼손되는 등 재산상 손해가 확대될 소지가 있는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복구를 ○○구청에 요구할 수 있는지</p>	<p>경우에는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구가 해당 사업을 향후 계속 시행하더라도 학교측의 재산상 손해가 더이상 확대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학교측으로서는 기왕의 손해에 대하여서만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고, 장래의 공사중지를 요구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합의가 안 된 상태라면 ○○구청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자료에 의하면 2020.4.3.경 ○○구청에서 공사중지에 대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재물손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고 민사적으로 공사중지가 처분 신청을 할 수 있음. 합의 없는 경우 학교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이므로 담벼락 훼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공사중지 명령이 아니라 공사중지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이든 요청이든 추후 다툼의 증거가 될 것임. 공사중지는 학교가 구청에 명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을 신청해야 강제력이 있음. 담벼락훼손에 대하여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당연히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의 방법 중 하나로 원상회복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함.</p> <p><input type="checkbox"/> 학교 내 담장, 숲 등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학교장이 이를</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관리할 권한과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할 것임. 따라서 학교장에게 적법하게 위임된 공유재산 관리 권한을 침해하는 ㉠㉡구청에 대하여 공사중지를 요청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사료됨.</p> <p>손해배상, 원상회복 등의 조치는 기본적으로 소유권이 침해되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사안의 경우 ㉠㉡구청에 의한 ‘공법상 사실행위’로서의 학교장의 권한을 침해하여 공사 진행이 이루어진 것인바, 손해배상, 원상회복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침해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상당함.</p>
29	아동학대 의심사례 판단결과 통보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교내 학생이 모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는 진술이 아동학대에 해당 되는가? <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에 해당될 경우, 학대의 종류와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학교 측에서 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한의 지원은 무엇인가?	<input type="checkbox"/> 아동학대에 해당됨.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에 해당되며 근거법령은 ‘아동복지법’ 임. <input type="checkbox"/>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30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의 측량착오 또는 경계설정 잘못으로 사인이 ㄱ중학교에서 설치한 담장을 신뢰하여 담장 바깥쪽의 토지를 본인의 소유로 알고 점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 징수 가능여부 및 대상기간 질의	<input type="checkbox"/> 변상금 징수가 가능하며, 무단 점유자에게 변상금 부과 기준 시점은, 민원인에게 보낸 최초 공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구두통보시점인 귀 학교에서 2018.11.경 경계측량을 통해 위 A,B에게 구두로 담장 밖 토지가 귀 학교의 소유인 사실을 알렸을 때, 즉 위 A,B가 점유할 권리가 없음을 알았을 때가 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상금 부과 기산점이 됨.</p> <p>비록 잘못된 담장설치로 인하여 그동안 위 A,B가 담장 밖 토지를 자신들이 매수한 토지로 오인하고 점유해 왔다 하더라도, 그 토지가 자신들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안 때부터 위 A,B의 점유는 악의의 점유로 전환되기 때문임.</p> <p>다만, 2018.11경에 구두로 통보하였다는 사정에 관하여 입증할 증거가 없다면 추후 변상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실질은 감축) 등의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2019.10.7.에 보낸 공문내용에 ‘2018.11.경 구두통보 한 바 있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다시 한번 2018.11.경 경계측량을 하여 구두로 통지한 사실과 2019.10.7.자 공문도 보낸 사실을 적시하시어 재공문을 발송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으로 보여짐.</p>
31	저작권 관련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온라인상에 게시된 ♡♡도서관 평생학습프로그램 안내문에 ◇◇◇◇◇서체를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라이선스 계약 여부 및 처리 방법	<input type="checkbox"/> ♡♡도서관과 ◇◇◇◇통신 사이에 ‘◆◆◆◆’ 폰트의 사용에 관한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필요성이란가 ◇◇◇◇통신의 저작권 준수 요청에 대하여 응할 필요성이 없다고 사료 됨.